

●국토교통부고시제2022-505호

서울~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결정(변경)

건설교통부고시 제2004-163호(2004.07.02), 제2005-65호(2005.03.26), 제2005-106호(2005.05.13.), 제2005-176호(2005.06.28), 제2006-235호(2006.07.04), 제2007-96호(2007.03.23), 제2007-250호(2007.07.02.),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-161호(2008.05.23), 제2008-457호(2008.08.12.), 제2009-29호(2009.01.21.), 제2009-108호(2009.03.10), 제2009-398호(2009.06.24), 제2009-544호(2009.08.11), 제2012-53호(2012.02.14), 제2012-775호(2012.11.15),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-573호(2015.08.12.), 제2018-122호(2018.02.27.), 제2019-542호(2019.10.08.), 제2019-1001호(2020.01.03.), 제2020-526호(2020.07.24.), 제2020-964호(2020.12.18.), 제2021-995호(2021.08.03.), 제2021-1120호(2021.09.29.), 제2021-1319호(2021.12.08.), 제2022-434호(2022.08.01.)로 고시된 서울~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「도로법」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 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22년 9월 일
국토교통부장관

1. 사 업 명 : 서울~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(6차로구간 연장 확장공사)
2. 사업시행자 : 서울춘천고속도로주식회사(사업시행)
서울지방국토관리청(용지보상)
3. 노 선 명 : 고속국도 제60호선(서울~양양선)
4.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: 2021.4.1.~2023.9.30.(30개월)
5. 도로구역 결정(변경) 사유 : 서울~춘천고속도로 도로구역 내 지장물 보상에 따른 세목고시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: “붙임”
7.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

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(㎡)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	비고
						성명	주소	
1	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	178-9	도로	263	-	국(국토해양부)		서울춘천고속도로 도로구역
2	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	177-19	도로	81	-	국(재무부)		서울춘천고속도로 도로구역
3	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	178-10	도로	41	-	국(국토해양부)		서울춘천고속도로 도로구역
4	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	183-23	도로	284	-	국(재무부)		서울춘천고속도로 도로구역
5	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	183-9	도로	155	-	국(국토교통부)		서울춘천고속도로 도로구역
6	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	183-24	도로	697	-	국(기획재정부)		서울춘천고속도로 도로구역
7	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	184-1	도로	321	-	국(기획재정부)		서울춘천고속도로 도로구역
8	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	178-1	도로	635	-	국(국토교통부)		서울춘천고속도로 도로구역
9	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	185-5	도로	85	-	국(재무부)		서울춘천고속도로 도로구역